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용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566
------	------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용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근거

-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

※ 시중은행 협력으로 출연예산(17억→4억) 절감

라. 출 연 금 : 400,000천원(구 출연분)

마. 필 요 성

- 1) 경기침체(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유통 및 경영위기 극복 지원
- 2)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금천구 출연 현황

- 1) 1차 출연 : 2009. 4. 8. (5억원, 보증한도 50억원)
- 2) 2차 출연 : 2013. 7. 1. (1억원, 보증한도 10억원)
- 3) 3차 출연 : 2020. 6. 23. ~ 12. 24. (40억원, 보증한도 560억원)

- 24억, 보증한도 360억원, 2020. 6월 ~ 2023. 11월

(「금천형 특별신용보증대출」 보증한도 360억원에 행안부 추가보증
배당액 60억원 추가하여 총 420억원 보증규모로 운영)

연 도	2020	2021	2022	2023	누 계
대출건수	633	583	312	255	1,783
대출규모(백만원)	14,674	13,378	7,685	5,999	41,736

- 16억, 보증한도 200억원, 2021년 한시적 사업

(「금천형 특별신용보증대출」 출연금 40억 중 16억원을 변경하여 서울시
소상공인 4무 무이자융자 사업 시-구 공동 출연금으로 사용)

대출은행	신한	하나	우리	총 계
대출건수	346	251	399	996
대출규모(백만원)	6,904	4,977	7,900	19,781

나.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개요

- 1) 보증규모 : 212.5억원(출연금 17억×12.5배)
- 2) 출연규모 : 17억원(금천구-은행연계 출연)
 - ※ 금천구(4억) + 우리은행(10억) + 하나은행(3억)
- 3) 보증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 4)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5) 대출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변동금리
- 6) 구 특별보증 혜택 : 대출금리 무이자(최초 1년 한시적 지원)

붙임 관계법령 1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특별보증지원)

-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